



보험금 청구서

QR코드 촬영으로
'삼성화재APP' 다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 인적 사항 및 보상 안내 받으실 분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장명/하시는 일	
보험계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보상관련 안내처	보험금 수령인 안내방법	성명	휴대폰				
		※ 반드시 한가지는 선택(□안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유선(전화)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안내거부 <input type="checkbox"/> (e-mail, 팩스, 주소 중 선택 사항 기재 : _____)					

2. 사고 사항

(해당 사고 유형에 V표시하십시오)

※ 상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신체가 다친 경우 / 질병: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이 신체 내부의 질환이 발생한 경우

사고유형	상해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교통상해 <input type="checkbox"/>	청구유형	최초청구 <input type="checkbox"/> 동일사고 추가접수 <input type="checkbox"/>
사고일(발병일)	사고장소		
사고(내원) 경위			
병원명(진료과)	진단명		
교통사고 정보	본인차량번호	본인 탑승위치	운전석 <input type="checkbox"/> 조수석 <input type="checkbox"/> 뒷자리 <input type="checkbox"/> 보행중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보험 접수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보험사	담당자/연락처 _____)

※ 청구하시는 담보(복수선택가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지급가능한 모든 보험금을 검토하여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진단비 수술비 사망 후유장해 비용 특정담보 보상제외 요청 (요청담보 : _____)

3. 보험금 수령 계좌

피보험자(수의자)의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	------	--	-----	--

※ 타인 계좌로 수령하시려면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보험수의자가 지정된 경우 수의자의 계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계좌 미기재시 보험료 납입계좌 혹은 최근 지급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확인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상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수탁자'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삼성화재 자회사 및 간이심사제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협력법인) 및 청구계약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을 말합니다.
- 본인은 별지의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을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 심사 기간, 지급기일 등)을 안내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피보험자(성명) : (서명)

법정대리인(성명) : (서명)

보험수의자(성명) : (서명)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진단·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피보험자가 서명하시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의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의자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하신 청구서류 일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잔존물 대위, 구상업무 관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금융거래(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을 위한 금융거래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업무
-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등으로 고객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정보(**운전면허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계좌정보, 가족관계 증명서류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검·경 등 수사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운전면허정보(**운전면허번호** 포함), 무면허 운전 여부 및 음주운전 여부 정보 조회(보험금 지급 및 사고정보는 과거 및 현재의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 내용을 포함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의 조회는 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ICIS)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을 말합니다.
- 경찰청이 보유하는 교통사고조사기록(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조회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법원, 검찰, 국세청, 경찰청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등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삼성화재 자회사 및 간이심사제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협력법인·보험사고 조사업체·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법무법인(변호사), 위탁 콜센터, 추심업체, 잔존물 매각업체], 손해보험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도로교통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 관련 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재보험 청구
- 업무수탁자 등 : 보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 (손해사정 업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 구상업무 등)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로 (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거래종료일 : 보험(대출)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각종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를 처리([수집·이용·조회·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질병 · 상해정보 처리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운전면허증번호 처리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일 : 20 년 월 일

피보험자(성명) : (서명)

법정대리인(성명) : (서명)

보험수익자(성명) : (서명)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선택 동의서

1. 채권양도 동의 안내

피보험자(수익자) 본인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예.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에게 피보험자(수익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원활한 채권행사를 위해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삼성화재에게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회사는 부득이하게 고객님에게 기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2. 의료기관 진료비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안내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피보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진료기간
 - 제공받는자의 목적 : 진료유무 및 진료비 산정방식 이상여부 상호확인
 -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 목적 달성시 까지
- ※ 본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급여 본인부담금의 1년 누적금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초과 시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동의일 : 20 년 월 일

피보험자(성명) : (서명)

법정대리인(성명) : (서명)

보험수익자(성명) :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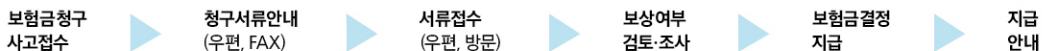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보상담당자는 서류 접수된 이후에 정해지며 당사 홈페이지나 담당RC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07995)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3, 14층 장기보험접수팀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감독규정 9·16조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단, 실손의료비 담보 단독 청구건의 경우 완화된 동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의료심사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의료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화재가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조회 서비스 안내

• 전자금융거래 회원에 가입하시면 (www.samsungfire.com)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증권 재발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 하시지 않는 경우 소보운영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창구 / 전화상담 : 1588-5114 (질병 및 상해 사고접수 / ARS 청신 후 5번을 누르십시오.)

• 우편 : (우0662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B동 삼성화재 3층 소보운영파트

예상 지급기일

•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부터 3영업일, 재물·배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손해사정서 교부 안내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그 손해사정서는 보험법 따라 계약자, 피보험자, 청구권자(수익자)에게 교부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보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 당사 콜센터(TEL "1588-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확인신청제도

•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주는 권리 구제제도입니다.

• 진료비 확인요청 범위: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진료비 중 '선택진료료', '선택진료이외' 항목의 비용

• 진료비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방문상담 가능(문의전화: 1644-2000)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께서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동의

① 본인은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본인의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법원, 검찰, 국세청, 경찰청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등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 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삼성화재 자회사 및 간이심사제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협력법인·보험사고 조사업체·손해사정업체, 위탁콜센터, 의료기관(의사), 법무법인(변호사), 추심업체, 잔존물 매각업체], 손해보험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도로교통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계약관리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각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거래종료일 : 보험(대출)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각종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필요시 추가로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자는 동일하나 수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각각의 수의자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타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신(접수)한 날이 보험금 청구일이 됩니다.

• 상기 내용에 동의하시고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송할 회사에 체크하여 주세요.

중복가입된 모든 회사에 전송

다음의 회사에만 전송 ()

동의일 : 20 년 월 일

피보험자(성명) : (서명)

법정대리인(성명) : (서명)

보험수익자(성명) : (서명)

청구·지급 절차 안내장 실손보험금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연락주세요
콜센터(1588-5114)



서류준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청구서류 안내장 참고)



3영업일 이내 지급

지급사유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



지급지연시 자연이자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3년이내 청구가능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 건은 2년



손해사정사 선임가능
별도비용 발생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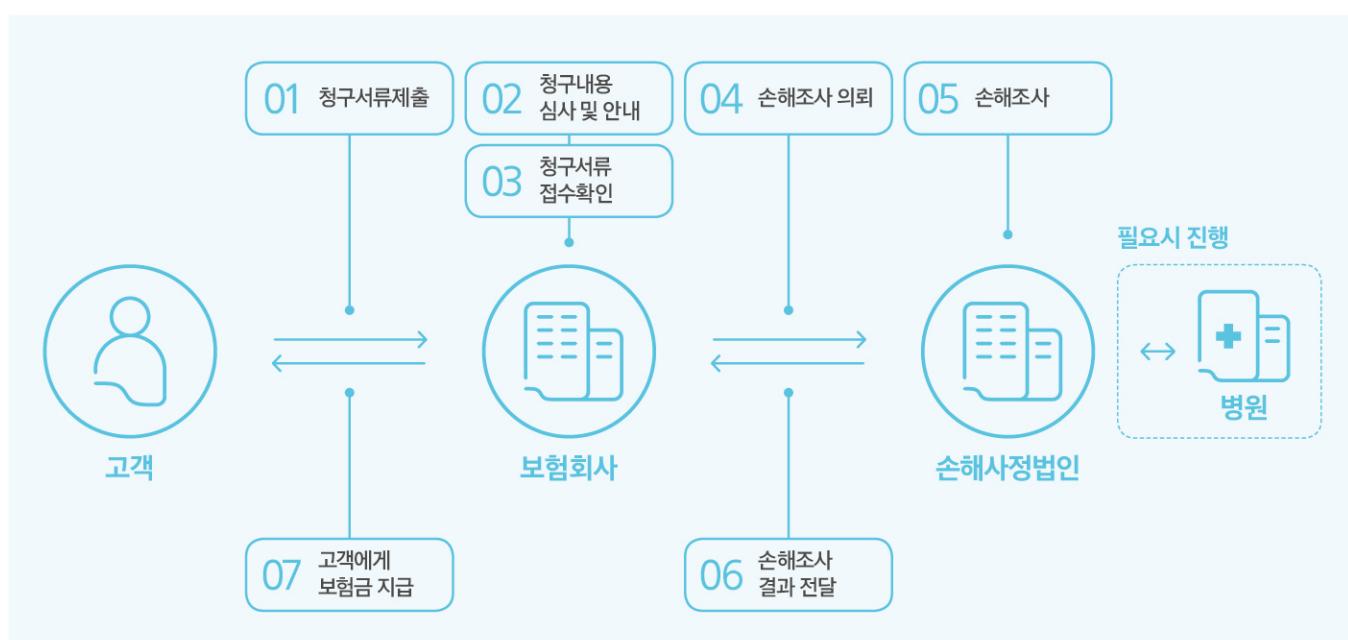


조사협조 부탁드려요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 필요



문제발생시 도와드려요
우리회사 콜센터(1588-5114)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Q&A

Q1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Q2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나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지급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또는 의료 심사 등에 동의 거부 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Q3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4 현재 보험회사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심사·조사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가지급보험금) 단, 최종 결정 보험금이 없거나 가지급 보험금보다 작으면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됩니다.

먼저
드립니다!



Q5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상지급일은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 이내입니다.

3 영업일



30 영업일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경우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해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심사 결과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거절 사유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거절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 된 경우 보험금은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Q7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는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최초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로 이를 전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청구서류와 함께 보험회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각 보험회사 특약에 따라 별도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B,C보험회사 계약자



Q8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자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을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 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 통보하여 동의 받은 때
(단,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건은 완화된 동의기준 적용)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사정을 척수하지 않을 때

Q9 손해사정사 선임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Q8 참조),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10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다시 의료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 할 때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하며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Q11 손해사정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